

●● 사업경영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●● 세금정보

국세청

- 01 부가가치세 안내
- 01-1 세금계산서 수수요령
- 02 종합소득세 안내
- 02-1 기준(단순)경비율제도
- 0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
- 04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
- 05 홈택스(Home Tax)이용 방법
- 06 불복청구 절차
- 07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
- 08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
- 09 납세자 권리헌장



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의무화 04

○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화

▶ 가입의무 대상자는?

-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
-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
- 의사·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
- 변호사 등 간이과세배제 대상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, 심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, 통관업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업자

※ 가입기한

신규사업자	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
계속사업자	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(~3. 31일까지 가입)

▶ 미가맹시미가입기간의수입금액 (=과세기간 총수입금액×미가입기간/365)의 0.5%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.

○ 소비자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

- ▶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거부금액(사실과다른금액)의 5% 가산세부과 및 각종불이익을 받습니다.
- ※ 현금영수증발급거부시 소비자가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'현금영수증포상금제도'가 시행 중

○ 현금영수증발급기준 금액폐지 및 발행건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

- ▶ 2008.7.1일 이후부터는 5천원미만 거래금액도 현금영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.
- ※ 다만, 가산세, 포상금대상금액기준은 종전대로 5천원 이상거래에만 적용
- ▶ 개인사업자가 과세연도 중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(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에 한함) 해당과세기간의 소득세납부세액에서 발행건당2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(산출세액을 한도)
- ※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발행건수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

○ 현금영수증발급 및 수취사업자에 대한 혜택

- ▶ 현금영수증 발급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의 1.3%를 부가가치세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. (공제세액 연간700만원한도) *음식, 숙박업자로서 간이 과세자는 2.6% 세액공제
 - 현금영수증발급으로 인한 수입금액증가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▶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수취시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일반사업자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매입하고 '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'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'신용카드매출전표'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(법인세) 계산시 필요 경비로 인정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
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(☎1544-2020)로 문의하세요

05 홈택스(Home Tax) 이용 방법

◎ 홈택스란?

- ▶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·납부, 증명발급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 (홈택스 주소 : <http://www.hometax.go.kr>)

◎ 전자신고·납부

- ▶ 전자신고는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서를 PC에서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고 하고, 전자납부는 은행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.
- ▶ 전자 신고를 하면 다음 금액이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.
 -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1만원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2만원, 법인세 신고 2만원

◎ 홈택스 민원증명 발급

주요민원증명

납세증명서*, 사업자등록증명*, 휴업사실증명*, 폐업사실증명*, 소득금액증명*,
납세사실증명*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*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*,
표준재무제표증명(개인/법인)

수출용 면세주류 구입 승인신청 등 17종의 민원서류

*영문증명 발급가능

※ 민원증명 원본 확인방법
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『증명발급>민원증명 원본확인』메뉴에서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원본여부확인(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)
-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홈택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으로 원본여부 확인

◎ 홈택스 이용절차

- ▶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공인인증서, 각종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가입용번호를 이용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공인인증서, 가입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.
 - ※ 궁금하신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 「홈택스 도우미」를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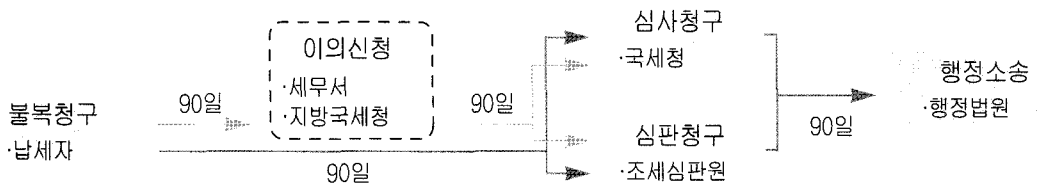
불복청구 절차 06

① 사전 권리구제 제도(과세전적부심사청구)

- ▶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,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② 사후 권리구제 제도

이의신청	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
심사청구	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
심판청구	
행정소송	심사청구·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



※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,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.

- 불복청구의 처리절차, 작성요령,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

『국세청(www.nts.go.kr) → 국세정보 → 납세서비스 → 납세자권리구제』를 참고

③ 납세자보호담당관

- ▶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으십시오.

사업장의 일반유선전화(휴대전화 제외)로 대표번호 1577-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 행정구역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됩니다.